

## 충청북도 감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1년 2월 25일
- 회부일자 : 2011년 3월 3일

### 3. 제안이유

-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감사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따라, 기능이 중복되는 충청북도 감사위원회 조례는 폐지하고자 함

### 4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 감사위원회 조례를 폐지함.

### 5. 검토의견

- 이번 폐지조례안은
  -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시행령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체감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감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함에 따라, 그 동안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됨으로 폐지 하려는 것임
  - 또한, 현행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부칙에서 정한 임기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이번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